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등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5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92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6조 및 제34조의2)	2
나. 약칭에 따른 용어로 조문 정비(안 제24조 등)	10

I.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92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7.

다. 회 부 일 : 2025. 4.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폐기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6조 및 제34조의2)

– 2 –

현행	개정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는</u>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도지사는</u>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u>시·도지사는</u>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 -----.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④ ----- ----- ----- -----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⑤ <u>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u>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u>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3조제3항¹⁾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34조의2²⁾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소유자등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

1)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 12. 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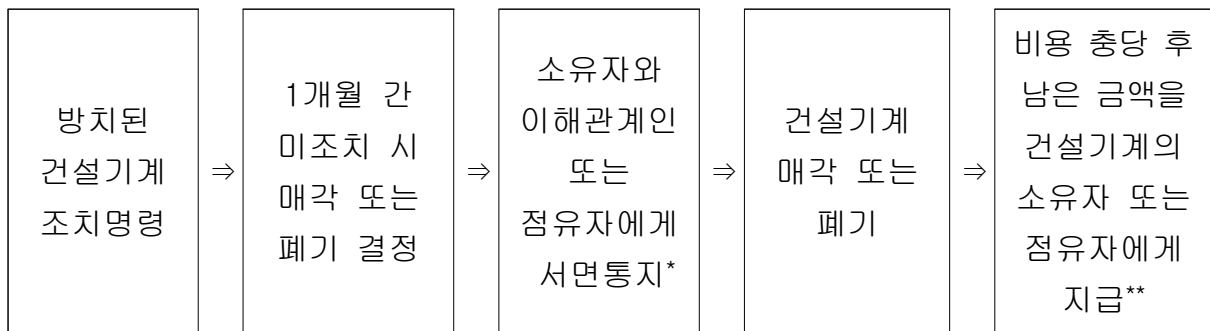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그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제3항) 하는 등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 강제처리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에 따라 공탁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사무의 수행 방식을 살펴
보면, 각 시·도의 대부분의 사무위임 조례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³⁾⁴⁾하고 있는데,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담당관	가. <u>건설기계 강제처리 등</u>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33조⁵⁾는 국가가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⁶⁾⁷⁾에서는 「건설기계관리

□ 교통국

	○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42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6.9. 제정, 2023.7.10.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법률]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7)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6.9. 제정, 2023.7.10. 시행)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심의·의결하였으며,⁸⁾

【이양 사무 목록】

법률	이양 방향	이양 사무
「건설기계관리법」	시·도 → <u>시·군·구</u>	▶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 명령 ▶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의 매각 및 폐기 ▶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 내용 등에 대한 공고 ▶ 건설기계 매각·폐기 비용 및 수익에 대한 조치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제21대국회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치분권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 법안에 14개 부처소관 48개 법률, 166개 지방이양 및 대도시특례 사무 포함”, 2021.7.26.

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⁹⁾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한 바 있음.

개정안은 현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도지사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점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이같은 수행 방식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과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¹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성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4563호, 2022.1.25. 정부 제출), 2024.5.29. 임기만료폐기

10)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높은 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주민 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시·도지사의 강제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안 제6조제5항 신설)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34조제2항¹¹⁾에서 건설기계 매각 또는 폐기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후 ‘대통령령’ 정비를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약칭에 따른 용어로 조문 정비(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②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⑤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은 제4항	⑤ <u>시장·군수·구청장</u> -----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④ (생략)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	----- ----- -----. ⑥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시장·군수·구청장</u>-----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

현행	개정안
정지)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지)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현행	개정안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시장·군수·구청장</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 -----<u>시장·군수·구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이 부과·징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 등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1조제1항¹²⁾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제24조 등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법문에 규정된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약칭에 따른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의처
02)6788-5591

12)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